

여신거래약정서 개정대비표

현행	개정(안)	비고
<p>제 16 조 자금용도 외 유용 시 제재조치</p> <div style="border: 1px solid black; padding: 5px;"> <p>① 대출금의 용도 외 유용 시 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 관련 조항에 따라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며, 해당여신을 즉시 상환 하여야 할 의무를 집니다</p> <p>② 자금용도 사후점검 대상인 여신은 취급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대출금 사용내역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제1항과 동일한 제재조치를 받게 됩니다.</p> <p>③ 용도의 유용 1 차 적발시 해당여신 상환일로부터 1 년까지, 2 차 적발시 해당여신 상환일로부터 5 년까지 신규여신 취급이 제한 됩니다.</p> </div>	<p>제 16 조 자금용도 외 유용 시 제재조치</p> <div style="border: 1px solid black; padding: 5px;"> <p>① 대출금의 용도 외 유용 시 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 관련 조항에 따라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며, 해당여신을 즉시 상환 하여야 할 의무를 집니다</p> <p>② 자금용도 사후점검 대상인 여신은 취급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대출금 사용내역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제1항과 동일한 제재조치를 받게 됩니다.</p> <p>③ 용도의 유용 시 본 대출 완제 여부와 관계없이 신용정보 집중기관에 채무자의 약정 위반사실이 제공되며, 최초 적발시 자금용도외 유용 적발일로부터 1 년까지, 추가 적발시 자금용도외 유용 적발일로부터 5년까지 신규 여신 취급이 제한 됩니다.</p> </div>	<p>자금용도외 유용 사후 준칙 개정 적용</p> <p>[약정위반 정보 등록시점과 기준 일치 및 유용 적발 차주에 대한 적발 시점부터 제재조치 적용키 위해 개정함]</p>